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면허번호)	국적		
공동수임 사무소	사무소명	구분 [] 개인 []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건축사법」 제23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cm×4.5cm) 2장	수수료 2만원
담당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건축사협회 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확인이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사협회 회장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